

## 민원 인쇄

인쇄자: 김경울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007-0072687
신청일	2020-07-03 10:10:25
신청인	김경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40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9(합정동) 3층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예

### 민원 내용

**제목**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울 회계사)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이 사건을 지휘·감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아래의 회신 시한과 회신처를 참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시한: 2020.7.17. (금)  
회신처: 경제민주주의21 이메일

#### I. 질의 배경

1. 언론보도(<https://bit.ly/2VlBlZd>)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6.25. '검언유착 수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하 "본 건 감찰")에 착수하고,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이하 "본 건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5조의3을 들었습니다.

2.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표 1>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감찰관 관련 규정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04. 12. 31.]

3. 언론보도(<https://bit.ly/2VHj5e3>)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지휘서신(이하 “본 건 지휘서신”)을 보내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휘하였습니다.

4.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 참조)

<표 2> 검찰청법 상의 지휘·감독 관련 규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5. 한편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3> 참조)

<표 3> 검찰청법 상의 검사의 보직에 관한 규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6.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지휘서신에서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를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설득력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II. 질의 사항

1. 감찰 지시의 적법성

<질의 1-1>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까? <질의 1-2>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한 사안에 대한 감찰입니까?

<질의 1-3>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은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감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질의 1-4>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습니까?

2. 전보조치의 적법성

<질의 2-1>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의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2-2>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는 검사의 보직 변경에 해당합니까?

<질의 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를 하거나 보직의 변경을 대통령에 제청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질의 2-4>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합니까?

<질의 2-5>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 건 전보조치를 취소하겠습니까?

3.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질의 3-1>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는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3-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만일 본 건 지휘서신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본 건 지휘서신을 취소하겠습니까?

4.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질의 4-1> 이번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특정하게 규정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나 행위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법무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7-0076180
접수일	2020-07-03 11:34:39
담당자(연락처)	김태경(02-2110-4206)
처리에정일	2020-07-22 23:59:59

최종 답변 내용

통지일 2020-07-22 16:00:1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울)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1AA-2007-0072687)를 통하여, ① 이른바 '채널 A 사건'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 검사를 지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지, ②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정한 수사가 방해되지 않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3. 먼저, 본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이 분명하고, 검찰청법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채널 A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수사지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수사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곽호광, 02-2110-3549)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 1. 김경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007-0072687) 중 검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한동훈 차장검사 검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 여부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서동재(02-2110-3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이전 답변 보기**

**답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0-07-07 11:32:57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2.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 3. 민원인께서 법무·검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담당자 : 법무부 검찰과 김태경(02-2110-4206)>

**답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0-07-22 16:00:13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2.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 3. 민원인께서 법무·검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담당자 : 법무부 검찰과 김태경(02-2110-4206)>

**답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0-07-22 16:00:13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2.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 3. 민원인께서 법무·검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담당자 : 법무부 검찰과 김태경(02-2110-4206)>

